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32호, 2005. 11. 4)

개정이유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2005.6.7)의 후속조치로서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절차 및 매입방법을 개선하고, 부도임대주택 · 기존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지정신청 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나. 지정신청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공고 절차를 폐지함(안 제20조제2항).

다. 주택사업시행자가 개별경매를 통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라.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및 건설중 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입 전에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21조제4항,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의 경우처럼 입주자격등의 공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기획팀, ☎ 031)463-89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안
(법무부공고 제2005-97호, 2005. 11. 4)

제정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 제7500호, 2005. 5.26 공포, 2006.1. 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필요

주요내용

가. 확인서 발급 전 보증취지 확인 절차

○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은 현장조사 전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함.

나. 확인서 발급 전 현장조사 실시 방법

○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듣고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503-7034

경관기본법 제정안
(건설교통부 제2005-325호, 2005. 10. 27)

제정이유

자연경관, 역사 ·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 ·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양호한 경관 유지, 훼손된 경관 복원, 창의적인 경관미 유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다양성 증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의 원칙에 따라 계획 · 관리되어야 한다.(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토전반의 계획적 경관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내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경관, 농산어촌경관으로 함(안 제4조).

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라. 시장 · 군수 또는 시 · 도지사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내지 제16조).

마.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을 관리하기 위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 · 군 · 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바. 경관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 시장 · 군수 및 시 · 도지사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으로서 경관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내지 제27조).

사. 시장 · 군수 또는 시 · 도지사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문의 :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정책팀, ☎ 504-911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환경부 제2005-243호, 2005. 11. 14)

개정이유

개발사업 구상의 기초가 되는 행정계획 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최근 개발사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61호, 2005. 5.31일 공포, 2006. 6. 1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종류와 협의요청시기, 검토서 작성내용 · 방법, 의견수렴 방법 · 절차, 재협의 등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등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32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이 계획수립 · 확정전에 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대상 행정계획으로 규정함.

나.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계보전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핵심 · 완충 · 전이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규모를 종래 "5천㎡ 이상"에서 "5천㎡ 이상~1만㎡ 이상"으로 차등 규정함.

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행정계획 등의 개요, 토지이용현황, 생태적특성,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의견수렴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되, 환경영향이 미미한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사업개요, 토지이용현황 이외의 항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환경성검토위원회 · 주민공람 ·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 전문가 ·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함.

마. 환경성검토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 환경단체 · 관계행정기관 · 협의기관 ·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 운영하도록 함.

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후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경우 등에는 재협의를, 협의 후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미만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이 생략된 약식협의절차)를 실시하도록 함.

※문의 :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 2110-670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건설교통부 제2005-349호, 2005. 11. 17)

개정이유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2005. 2. 2.)에서 결정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품질관리자 의무배치기준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준을 축소 · 조정키 위해 2005년10월12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일부 변경안을 조정하여 재입법예고 하는 것임.

나. 현행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고급, 중급, 초급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품질관리자 자격인정 범위의 등급과 일치토록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은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1,000억원이상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 분리함.

다. 현행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는 품질관리자 3인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둘로 구분하여 특급공사는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자 각각 1인 이상으로, 고급공사는 고급 및 중급품질관리자 각각 1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시험실 규모는 고급공사에 대하여만 50제곱미터로 축소 조정함.

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문의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 ☎ 504-9026